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4년 07월 16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대한토지신탁(주)
(영문명) DAEHAN REAL ESTATE TRUST CO., LTD
(홈페이지) <http://www.reitpia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(삼성동, 아셈타워) 26층·33층
(전 화) 02-528-4477

대 표 이 사 : 박 종 철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부문이사
(성 명) 김 영 승 (전 화) 02-528-0403

작 성 자 : (직 책) 리스크관리팀장
(성 명) 안 성 희 (전 화) 02-528-0437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8-1호)

시공사 또는 위탁자의 부도발생

1. 부도발생기관	코리콘건설(주)
2. 최종부도(당좌거래정지)일자	-2022.10.05(회생절차신청) -2022.10.13.(포괄적 금지명령) -2023.01.18.(회생절차개시결정) -2024.05.28.(회생절차폐지) -2024.07.05.(파산선고)
3. 확인일자	2024.07.12
4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2024.07.04.(폐업자)-국세청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1항6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4호다목에 따라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된 것을 확인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부도발생기관”은 해당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한 시공사 또는 위탁자를 기재한다.
- 주3) 상기사항 외의 부도내용(어음부도·수표부도), 부도금액, 부도발생은행, 부도사유 및 경위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